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020-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액(천원)	
총 무 인 사 처	2020년	-	-	-	주의 2

【제 목】 ‘20년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대가기준 준수실태 자체점검에 따른 특정감사

■ 특정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0.19. ~ ‘20.10.30.
- 감사근거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제21조(징계)
- 감사중점 : ① 신고의무 준수 여부, ② 복무처리의 적정성,
③ 강의료 등 사례금 상한기준 준수여부

■ 특정감사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처	경영 2급	◇◇◇
□□□□처	경영 2급	☆☆☆

■ 사실관계 및 확인

[◇◇◇ 처장]

- 2020년 ○월 ○일 ◎◎도시공사에서 주최하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MP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2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문회의 참석 전인 ○월 ○일 사전신고 후 출장(사장승인)으로 복무처리함
- 이후 ◎◎도시공사에서 주최하는 동일내용의 회의에 2차례 더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는 미신고함(○월 ○일, ○월 ○일). (신고의무 위반 2건)
- 최초신고 후 이루어진 MP자문은 연말 또는 자문종료 시에 일괄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답변
- 한편, 2020년 ○월 ○일~○일 사이에 이루어진 ◎◎도시공사에 의뢰한 내부규정 제정 관련 자문에 대해 미신고함 (신고의무 위반 1건)
- 이에 대해서는 서면자문으로 미참석이고 수수료 언급이 없어서 무급으로 인지하고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도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변
- 2020년 ○월 ○일~○일 사이에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녹색건축인증 심의’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수행하고 3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신고의무기한(강의종료 후 10일)을 지나서 ○월 ○일 신고함 (신고기한 위반 1건)

[☆☆☆ 처장]

- 2020년 ○월 ○일 ○○도시공사에서 주최하는 ○○시 발전방향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후 그 수당으로 20만원을 수령함
- 이와 관련하여 강의종료 후 10일 내인 ○월 ○일 사후신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시간제휴가 내지 출장(사장승인) 처리는 하지 않음
- 당시 외부기관에 파견근무 중이어서 시간제휴가 내지 출장(사장승인)등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 (복무처리위반 1건)
- ○○도시공사 내부규정 제정관련 자문건은 상기 ◇◇◇ 처장과 동일함(신고의무 위반 1건)

○ 신고기한위반 등에 대한 확인

요청기관	건 명	신고일	실시일	규정위반	비고
▽▽▽산업 기술원	●●그랜드 센트럴 외 1건 자문	'20.0.0.	'20.0.0.	신고기한 미준수	◇◇◇ 처장
○○도시공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MP회의(4차) 참석	-	'20.0.0..	미신고	
○○도시공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MP회의(5차) 참석	-	'20.0.0..	미신고	
○○도시공사	내부규정 제정 관련 자문	'20.0.0.	서면	미신고 (감사착수 후 신고)	☆☆☆ 처장
○○도시공사	○○시 발전방향정책토론회 패널 참석	'20.0.0..	'20.0.0.	복무처리 위반	
○○도시공사	내부규정 제정 관련 자문	'20.0.0.	서면	미신고 (감사착수 후 신고)	

※ 복무처리 미실시는 「외부강의등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총무부-3658, '20.10.15) 공문을 통해 확인, 미신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외부강의등 현황 회신」(○○도시공사 청렴감사팀-1525, '20.10.05) 공문으로 확인

■ 위반사항에 대한 검토

【◇◇◇ 처장】

- 신고기한 미준수(1건)의 경우 직무유착 부패발생 위험성이 희박하고, 별도의 사적 이익 등을 취한 바 없음
- 신고의무 위반(3건)의 경우 1차 MP회의를 규정대로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MP회의 미신고 2건의 경우는 일괄신고 제도에 대한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고의적 미신고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서면심사의 미신고 1건의 경우 역시 상대기관 담당자가 수수료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신고대상이

아닌 무급심사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 미신고는 아니라고 판단됨
(세부내용은 경위서 및 확인서 참조)

【☆☆☆ 처장】

- 복무처리 위반 건의 경우 파견기간 중 업무미숙지로, 출장 내지 시간제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신고 및 대가기준은 규정을 준수하였음
↳ 사용하지 못한 시간제휴가에 대해서는 인사부를 통해 기처리함
- ◎◎도시공사 내부규정 제정관련 자문 건은 상기 ◇◇◇ 처장건과 동일함

■ 신분상 조치

【◇◇◇ 처장】 : 주의

- 신고기한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였으나(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24조 제3항), 이는 신고자체는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직무유착발생 부패위험은 적다는 점, 미신고 3건의 경우는 각각 일괄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내지 상대기관 담당자와 소통부족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 미신고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조치

【☆☆☆ 처장】 : 주의

- 복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나(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24조의3), 외부강의 신고의 무 및 대가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점 및 파견기간 중 업무미숙으로 인해 시간제 휴가를 등록하지 못한 점, 미신고 1건의 경우는 상대기관 담당자와 소통부족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 미신고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조치